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장미경 의원 외 6명

2. 제안이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여 근로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대상자, 유급병가 지원 기준액(안 제5조~제6조)
- 라.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7조)
- 마. 이의신청 및 지원금의 환수(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최저임금법」, 「전자정부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3. 3. 3. ~ 3. 8.)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 근로취약계층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13일 이내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생계가 어려우나 병가를 사용하지 못해 질병과 빈곤의 위기에 처한 근로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현재 정부에서 '22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의거 '한국형 상병수당'이 서울 종로, 경북 포항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 추진(시범 사업 후 '25년경 전국 확대 목표로 시행 예정)하고 있으므로 지원기준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안) 비교

구분	상병수당(시범사업 중)	유급병가(구미 기준)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각 지자체 조례
지원 연령	만15세 ~ 65세미만(취업자)	나이 제한 없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사업등록3개월+전월매출191만원이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14개 직종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지원 내용	최저임금의 60% 지원 (1일 46,180원/23년기준) 입원 또는 입원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100% 지원 (1일 76,960원/23년기준) 입원
지원 기간	대기기간 (모형에 따라 3일, 7일, 13일) 제외하고 연간 최대 90일 지원	연간 최대 13일 이내 (외래진료 3일 포함) 대기기간 없이 첫날부터 지원
소득 증빙	대상자 기준이 소득기준이 아니고 취업자 여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여부 확인
지원 제외	고용보험급여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등	별도 지침 준비(생계급여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중복제외)